

2007. 10.

2007년 도
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

산업경제위원회

목 차

1. 감사목적 -----
2. 감사기간 -----
3. 감사실시 대상기관 -----
4. 감사반 편성 -----
5. 감사일정 및 장소 -----
6. 주요감사사항 -----
7.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-----
8. 감사요령 -----
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-----
- <별첨 :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> -----

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1. 감사목적

지방자치법 제41조,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·개선토록 하는 한편,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 : 2007년 11월 21일 ~ 11월 30일(10일간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구 분	본청 및 직속기관(사업소 포함), 법인단체
당연기관	가. 경제투자본부 나. 농정본부 다. 농업기술원
본회의 승인대상 기관	가.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. 신용보증재단 다. 지식산업진흥원 라. 테크노파크 ※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함.

4. 감사반 편성

대상기관	감사위원	감사보조
7개 기관	7명	5명
경제투자본부 농정본부 농업기술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	감사위원장 정윤숙 감사위원 민경환 " 권광택 " 박종갑 " 이규완 " 이대원 " 이영복	전문위원 최영배 보조직원 최재훈 김기완 속기사 2명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정		대상기관	감사장소	비고
11. 21(수)	10:30	경제투자본부	산경위회의실	
11. 22(목)	10:30	농정본부	산경위회의실	
11. 23(금)	10:30	농업기술원	산경위회의실	
11. 26(월)	10:30	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	종합지원센터 제1회의실	현지
	14:30	신용보증재단	종합지원센터 제1회의실	
11. 27(화)	10:30	지식산업진흥원	지식산업진흥원 회의실	현지
	14:30	테크노파크	반도체센터 회의실	
11. 28(수) ~ 11.30(목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지 확인 및 감사결과 종합검토 ·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		

※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주요감사사항

- 2007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
-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
-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
- 각종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
-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
- 도정질문 답변 사항의 사후관리 실태
-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
- 법, 제도,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
- 기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전반

7.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

가.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(업무계획과 그 실적)

※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 포함(2007. 10월말 기준, 목별작성)

나.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·촉구, 건의사항 처리결과

다. 8대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

- 위원회별 구분 합철하여 별책으로 작성(완료분 포함)

라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: 별지 참조

8. 감사 요령

가. 감사방법

-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, 질의·답변,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함.

-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하여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 및 진술 청취

나. 감사자료 제출요구

-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11. 12일까지 관계 본부(원)별로 30부씩 제출한다.

※ 경제투자본부 : 재단 별책 포함 제출

-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로 국한한다.

다. 증인 등의 출석 요구

- 피감사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 출석·증언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요구함.

- 대상은

- 경제투자본부장, 농정본부장, 농업기술원장, 해당팀장, 해당과장,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, 감사시험장
-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: 본부장, 경영관리부장
- 신용보증재단 : 이사장, 사무국장, 신용보증부장, 총무부차장
- 지식산업진흥원 : 원장, 관리팀장
- 테크노파크 : 원장, 행정지원실장, 각 단장·센터장

-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함.

라. 선서요령

- 선서는 피 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
- 본부장, 기술원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한다.
-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(감사반장)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함.
- 위원장(감사반장)은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한다

마. 감사진행 순서

- ① 감사개시 선언 (위원장) - 의사봉 3타
- ② 감사반장 인사 : 감사실시 취지 등 설명
- ③ 피감사 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선서
- ④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
- ⑤ 질의 및 감사 (현지확인 병행)
- ⑥ 감사종료 인사 (위원장)
- ⑦ 감사종료 선언 - 의사봉 3타

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가. 방 침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한다.

-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, 촉구 및 건의사항,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.

나. 작성요령

-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(서식)를 사전에 배부
- 감사 실시 직후에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을 감사반장(위원장)에게 제출
- 감사위원 의견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(안)를 작성,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